

**동화3지구
지역주택조합**

Head Office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6, 2층

TEL 031-227-9944 FAX 031-297-7272

문서번호 : 2023-02-01

시행일자 : 2023-02-03

수 신 : 화성시장

참 조 : 도시정책과(도시시설팀)

제 목 : 동화3지구 도시계획시설[공원, 녹지] 사업 조성공사 보상계획 열람·공고 요청

소 재 지 :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일원

1.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동화3지구 공원, 녹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'토지보상법)」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·공고 요청합니다.
3. 첨부 : 동화3지구(공원, 녹지)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및 토지조서

끝.

동화3지구 지역주택조합



동화3지구(공원, 녹지) 보상계획 열람 공고

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일원의 “동화3지구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조성공사” 도시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」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의 명칭: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조성공사
- 사업시행지역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일원
- 사업시행자: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
- 사업규모: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결정	①	공원	어린이 공원	봉담읍 동화리 227번지	1,720.1	화성시고시 제2018-160호 (2018.03.29)	
시행	①	공원	어린이 공원	봉담읍 동화리 227번지	1,720.1	-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결정	①	녹지	완충녹지	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일원	3,321.5	화성시고시 제2018-160호 (2018.03.29)	
시행	①	녹지	완충녹지	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일원	3,321.5	-	

- 사업시행기간: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~ 2023.05.31.

2. 금번 보상대상 내역

- 보상대상 : “토지조서” 별첨

3. 열람 기간 및 장소

- 기 간: 2023.02.03.(금) ~ 2023.02.17.(금)
- 장 소: - 화성시(도시정책과)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, (031-5189-2467)
- 동화3지구조합사무실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6, 2층 (031-227-9944)

4. 보상의 시기

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■ 보상액 산정 및 통지

보상액은 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(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

■ 보상금 지급

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.

■ 보상 절차

보상계획통지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→ 보상액 산정 → 손실보상 협의 → (협의 불성립시) 재결 절차 진행

6. 감정평가법인등 추천

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◀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(양식-예시) ▶

토 지 소재지	지 번	편입(예정) 면적(m ²)	토지 소유자			날 인 (서명)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전화)	감정평가 법인등
			성 명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앞자리	주 소			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(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) 하여야 하고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,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.

7. 기타 사항

-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,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는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(보상사무실) (031-227-9944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및 경작자(점유자)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 시청 도시정책과 (031-5189-246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02. 03.

사업시행자 :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



토 지 조 서

◦ 사업명 : 동화3지구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조성공사

번호	소재지	편입지번	지목	편입면적(m ²)	소유자		관계인		비고
					소유지분	이름	이름	권리관계	
1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	227	임야	2,736.50	1/1	동화3지구 지역주택조합	주식회사 광주은행	근저당권	
2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	238-108	도로	145	1/1	동화3지구 지역주택조합	주식회사 광주은행	근저당권	
3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	238-114	대	435	1/1	이*록			
4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	238-165	대	5	2/4	박*남			
					1/4	차*철			
					1/4	차*아			

* 어린이공원 전 토지 취득으로 보상계획 해당없음.